제 33 호

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

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광장동주민센터 주소로 전환되니 2022년 07월 11일 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세대주성명	성 명 생 년 월 일	최종신고 주소	신고사항
양**	양** 1952-10-03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	재등록
양**	송** 1981-02-13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0길	재등록
유**	유** 1960-08-21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78길	재등록
김**	김** 1964-05-05	서울특별시 광진구 아차산로	재등록

※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「주민등록법」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(등록, 정정,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)가 이루어지며,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(「주민등록법」제40조제3항).

(담당자 : 권정금 문의전화 : 02-450-1509)

2022년 07월 04일

광장동장 인

광장동장인